

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(제24조 관련)

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구성·운영하는 시설의 종류	배치기준
1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	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 표 2의 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 도사를 배치할 것
2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	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 표 2의 기준에 따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 도사를 배치할 것
3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	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 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림치유 지도사를 배치할 것
4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 률」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	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 표 3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유아숲지도사를 배 치할 것
5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 률」 제13조에 따른 산림교육센터	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 표 4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
6.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 청장이 지정하는 시설	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 할 것